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2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김승수・안철수・박성훈

우재준 · 김예지 · 권영진

최보윤 • 서지영 • 정동만

박성민 • 이인선 • 조승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아동학대 처벌 법제는 「아동복지법」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,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에 「아동복지법」이 적용되고 있음.

그런데 「아동복지법」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으로,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아동 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 삭제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2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66조제1항 중 "주소·거소,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"를 "주소·거소 또는 아동의 고용장소에"로 한다.

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72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17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다음	<삭 저	1)>	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		
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				
<u>1.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</u>					
2.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					
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					
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					
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					
3.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					
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					
치는 신체적 학대행위					
5.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					
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					
(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					
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					
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					
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					
<u>포함한다)</u>					
6.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					
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					
<u>포함한 기본적 보호·양육·</u>					
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					
<u>방임행위</u>					

- 7.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
- 8.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 위
- 9.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
- 10.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행위
- 11.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
제66조(조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 전 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 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의 <u>주소·거소</u>, 아 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

웨66조(조사 등) ①	
	또는
아동의 고용장소에	

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1조(벌칙) ① 제17조를 위반한 제71조(벌칙) <u><삭 제></u> <u>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</u> 라 처벌한다.

- 1. 제1호(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1의2.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
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
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
 다.
- 2.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(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)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 제71조(벌칙) <삭 제>

- 3.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- 4.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72조(상습범) 상습적으로 제71 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 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.

제73조(미수범) 제71조제1항제1호 <삭 제>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